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나7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개명전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희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형욱, 정병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신

변론 종결 2020. 4. 7.

판결 선고 2020. 5. 12.

제 1 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843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E에게 1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 이후 지연손해금.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2018. 10. 12.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2019. 1. 16. 비로소 이 사건 소송 진행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1. 24. 추완항소를 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을 기초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1186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8. 11. 29. 피고에게 그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므로 그때쯤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1심 과정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에서는 송달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야간특별송달 결과도 모두 피고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됨),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은 피고의 아버지 E이 2018. 11. 29.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수령하였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9. 1. 16. 이전에 제1심 소송 진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하여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10. 13.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피고는 같은 날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고(을5), 등기부상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대출원리금을 순차 상환하여 2019. 8. 21. 기준 대출잔액은 91,678,180원(대출만기일 : 2031. 10. 13.)이다(을6). 피고가 대출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일정한 부담을 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원고들의 주장처럼 E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E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의 신탁(사용 · 수익 · 처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은 전적으로 E이 가지고, 피고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는 관계)으로 보아, E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이흥권, 판사 이효두

1) 원고는 매매대금이 2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억 6천만 원이라고 한다.